

인천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8나719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8나7191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단153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최성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이상미

변론 종결 2020. 7. 8.

판결 선고 2020. 8. 2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단153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증인 AF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31. 당시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곧 폐업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고의 신축분양물 광고를 적극 이행하고 미지급된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마치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계속 운영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지 및 장래 수익 발생의 기대 및 착오에 빠져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폐업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인바, 원고가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09, 110조에 의하여 2019. 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합의서 역시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기망에 따른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소 여부

1) 관련 법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저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기망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7. 7. 31.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및 2017. 8. 1.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전대차계약 종료 및 폐업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도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의사표시 취소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러한 고지의무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2017. 7. 31. 작성되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2017. 8. 1. 작성되었는데, 2017. 8. 19. 원고가 인근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상호도 'D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그 시기경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0,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A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전대차계약 종료 및 상호 변경 또는 폐업

예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17. 8. 19. 여전히 인근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중개사무소는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장이고,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 인근에서 여전히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중개사무소의 위치를 이전하고 다른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 이행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명칭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체결 전에도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분양담당자로 피고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어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광고와 피고의 분양대행 업무 이행에 있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지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들에게 이전하는 사무소에서 함께 일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였다면 원고와 계속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착오에 따른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소 여부

1)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피고의 광고를 적극 이행하고 중개수수료도 분배하여 장래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동기가 원고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이전 및 폐업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착오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가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다고 하여 피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위치 등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동기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